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 정 2000. 12. 18.
1차 개정 2009. 02. 05.
2차 개정 2013. 12. 06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과 직무)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.
②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의 자질과 능력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적격성 여부를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③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해당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②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주주총회의 선임절차가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6조(해임) 위원은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
제7조(대표) ①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(이하 “대표”라고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대표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 또는 위임할 수 있다.

③대표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8조(소집권자) 위원회는 각 위원이 소집한다. 단,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소집절차)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(결의방법)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의사록)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2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